

# 9. 建設技術管理法 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財政經濟院公告 第1997-36號 1997. 5. 7

## 주 요 골 자

- 가. 설계 또는 감리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증의 종류 및 방법과 보증기간 및 보증액을 새로이 정함
- 나. 설계심의대상을 현행 중앙건설기술위원회는 200억원이상, 지방위원회는 30억원 이상이었으나, 중앙위원회는 500억원이상의 P·Q대상공사, 지방위원회는 100억원 이상의 P·Q대상공사, 지방위원회는 100억원이상의 P·Q대상공사로 조정함.
- 다. 시설물의 설계,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·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위원회의 구성·운영·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- 라.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,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·2종 시설물 등으로 정하고 수립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
- 마. 건설자재·부재의 생산자가 직접 품질시험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던 것을 제3자인 품질 검사전문기관이 제출하도록 하여 품질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.
- 바.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강 구조물 제작공장의 등급인증 대상·기준·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- 사. 기술인력 수급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책임감리대상공사를 50억원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서 50억원이상의 P·Q대상공종으로 정함.
- 아. 건축사로 제한되어 있는 건축감리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토목·설비감리회사와 동일하게 완화함.
- 자. 감리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력, 자본등 등록기준을 현재의 2분의 1수준으로 완화함.
- 차.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건설기술 교육훈련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함.

개정이유

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('97. 1. 13)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